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모든 범죄로 인한 치료감호 가중료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291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모든 범죄로 인한 치료감호 집행 가종료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 | 2 |
| 2. 부착 .....                                | 7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동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7.
3. 회 부 일 : 2025. 1. 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석방 시에는 특정범죄자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종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III. 검토의견

1. 모든 범죄로 인한 치료감호 집행 가종료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개정안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중료등이 되는 자(특정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칙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br>-----<br>----- <u>치료감호-</u><br>-----<br>-----<br>-----<br>-----<br>-----<br>-----<br>-----<br>-----<br>-----<br>-----<br>-----<br>-----<br>----- . 다만, 제9조에 따라 부칙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가종료자등은 제외한다.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sup>1)</sup>를 저지른 사람이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게도 범죄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어<sup>2)</sup>, 범죄의 유형을 불문하고 가석방이 예정되는 전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함.

- 그런데,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도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sup>3)</sup>, 현행법은 특정범죄를 저질렀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가종료자등에 대해서만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장치를

---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①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한다)이 시작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구 「사회보호법」 제10조(보호관찰)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피보호감호자가 가출소한 때 또는 병과된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종료는 비교적 재범위험성이 적은 피치료감호자를 조기 출소시키는 절차이고<sup>4)</sup>, 가석방은 법원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 행상이 양호하며 개선의 정이 현저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제도임<sup>5)</sup>.

○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sup>6)</sup>를 저지른 가종료자등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종료자등을 가석방된 자와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22조제2항이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2조제3항은 모든 범죄자에

---

4) 현재 2005. 2. 3. 선고 2003헌바1

5) 현재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료감호 대상자는 다음으로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치료감호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飲)·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 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가중료자등도 이들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입법론적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와 가중료자등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sup>7)</sup>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sup>8)</sup>에 각각의 사무에 가석방 예정자 및 가중료자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사무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현행법이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가 가중료 또는 치료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중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4.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사항

위탁되거나 가출소 되는 경우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미흡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문지마 폭행 등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특정 범죄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경우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가석방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에는 ‘특정범죄’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 되는 자를 구분하여 ‘특정범죄자’와 달리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가종료의 경우에도 가석방과 같이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자는 ‘특정 범죄자’와 별도의 요건 등을 마련하여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종료 등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가 가종료등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3조제1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4.15., 법률 제10257호) 제2조제1항 위헌제청 사건<sup>9)</sup>에서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결정<sup>10)</sup>한 바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은 신체의 자유라는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강한 ‘형벌적 성격’을 가진 형사상 제재이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9)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10) 재판관 9인 중 4인은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마련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자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7개월 만에 부칙조항을 마련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재판관 1인은 해당 부칙조항이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이 규정한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부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범행 당시에 이미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야 하고, 해당 부착조항은 소급 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감안하여 개정안이 소급적용 하고 있는 부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75 |